

문서번호	보건위생과-4674
결재일자	2015.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식품위생담당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박완승	이창희	김근선	03/25 황원숙		
협 조					

## 201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2015. 3.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201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용자 등으로 영세 식품위생업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I 식품진흥기금 운용 개요

####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9조

■ 설치연도 : 2001.3.5 [서울특별시성북구기금관리조례로 통합제정 2006.5.30]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의 향상 사업 수행 재원 충당

■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위반 과징금 등

■ 조성주체 : 자치구청장 (귀속비율 : 서울시 40%, 자치구 60%)

#### ■ 사용용도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자금 융자,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예방사업 등

#### ■ 기금 자산규모

(2015. 1월 현재, 단위:천원)

총 액	금융기관 예치금			용자금		
	소계	정기예금	보통예금	소계	시설개선	화장실개선
808,820	749,140	450,000	299,140	59,680	59,680	0

## II 연도별 식품진흥기금 용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구분	자금 용도	용자 업소	용자 금액	용자 업소	용자 금액	용자 업소	용자 금액	용자 업소	용자 금액	용자 업소	용자 금액	용자 업소	용자 금액
합계		7	222,000	0	0	1	10,000	0	0	4	159,000	2	53,000
일반 음식점	시설 개선	7	222,000	0	0	1	10,000	0	0	4	159,000	2	53,000
	화장실	-	-	-	-	-	-	-	-	-	-	-	-

## III 2015년 식품진흥기금 용자 실시

### ■ 기본방향

- 영세 식품위생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경기 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해 용자금 적극 지원
-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시설이 열악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용자

■ 용자기간 : 2015. 3월 ~ 12월(용자규모액 소진시까지)

■ 용자규모 : 306,000천원

- 시설개선자금(성북구 식품진흥기금) : 200,000천원
- 모범업소육성자금(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 106,000천원

### ■ 용자금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등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등 구입은 배제

○ 육성자금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용자금 상환,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 행위, 경마·카지노 등 도박행위, 경조사·여행비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 등은 배제

### ■ 용자종류 및 대상, 용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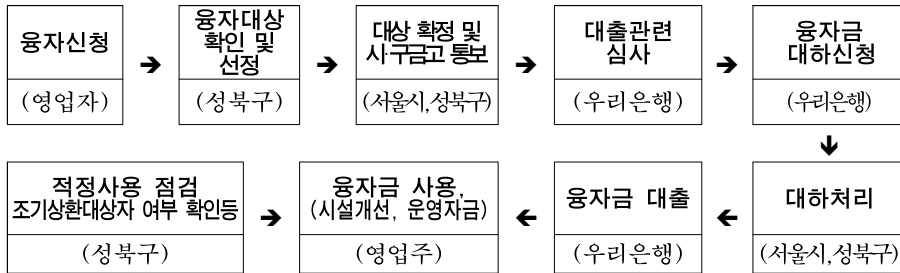
구분		용자조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일반 용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	5천만원	1년거치2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금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2%	1억원	1년거치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	2천만원	1년거치2년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2%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어린이보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	3천만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특별 용자	육성자금	관광식당	1%	5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1%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 ■ 용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용자신청 방법

- 접수처 :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담당자, ☎ 02-2241-6162]
- 구비서류 :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완료신고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지정세(모범음식점, 한국음식점, 관광식당) 사본 등

○ 처리절차



■ 대출업소 사후관리

- 사업완료(시설개선)신고서를 받을 때에는 사업완료 신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제외]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것
- 용자금이 대출된 업소가 용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목적외 사용 등 확인시 대출금융기관 및 서울시에 즉시 통보하여 조기 회수토록 조치
  - 시설개선자금은 대출 후 3개월 이내 현장 확인 점검 복명
- 용자업소의 폐업, 지위 승계 시 용자금을 조기상환 하도록 조치
  - 조기상환 발생 및 조치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 및 관리(분기별)
  - 용자업소에 대한 새울시스템에 입력하여 조기상환 대상 여부 확인 철저

IV 행정사항

- 구청 홈페이지, 성북소리 등 게재 홍보 실시
- 외식업협회 등 위생관련단체를 통한 홍보 협조 요청
- 관내 모범음식점 등에 식품진흥기금 용자 안내
-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홍보 협조 요청

붙임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식품진흥기금 용자 안내문 1부.  
2. 신청 서식 1부. 끝.